

### 1. 장애여성공감의 정상성에 도전하는 장애여성, 장애여성 운동

“장애가 있는 다리에 맞춘 보조기는 정확하게 수치를 재서 맞춰 신어도 불편한 느낌입니다. 좀 더 똑바로 걸을 수 있으려면 보조기 끈을 꼭 조여야 하는데, 걸음걸이가 똑바로 보일진 몰라도 결국 발은 더 아파지거든요. 보조기를 신은 몸을 보는게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장애여성 정책과 제도도 그런 느낌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에서 장애여성 활동가가 제도화에 대해서 몸이 느끼는 감각이다. 제도가 필요하지만 제도화 이면이 주는 긴장,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의 몸을 부정하는 국가 권력의 억압을 드러내는 말로 들린다. 이 몸의 언어로부터 이 글을 시작하고 싶다.

정체성은 계속 변화한다.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쉽게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다.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지 알고 있다. 폭력은 구조적 차별에서 자라나며, 성적 위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를 뒤집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적 자유와 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에 도전하고 역량을 박탈하는 구조에 맞서 싸운다. 사회를 향해서 장애인에게 성별정체성과 성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여성 안에도 몸의 차이와 위계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이 여성의 경험을 단일화하면서 장애여성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연대하는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sup>1</sup> 이 글은 2022 세계인권도시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와 시설사회에 맞서는 저항과 연대의 정치>,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보호와 온정을 거부하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활동가 고나영, 진은선과 나눈 토론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촛불광장 이후 들어선 정부는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새롭게 확장시킬 의지가 없어 보였고, 정권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무렵에 공감은 20주년을 맞이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활동했지만 장애여성 인권의 교차성을 통합적으로 보는 정책은 진전이 없었다. 취약함과 피해자라는 (장애여성운동이 인식하기엔) 끝이 보이는 막다른 길만을 제시하는 제도의 한계속에서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몸’이란 선언은 페미니즘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새롭게 쓰고 싶단 의지였다. 얼마나, 어떻게 더 싸워야 하는가? 회의보다는 긴장과 의지를 가지고 싶은 절박함으로 비슷한 처지에 동료들을 찾는 타전이기도 했다. 선언문을 쓰고 20주년 행사를 치루는 과정은 오랜 시간 익숙했던 관계와 운동을 낫설게 봐야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장애여성운동의 위치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눈에 띄는, 당장 손에 잡히는 큰 대중조직이 보이지 않았지만, 억압의 질서를 비판하고 토론으로 입장을 버림으로써 인식과 의지를 조직하는 과정을 이 선언문을 통해 제안하고 싶었다. 그 힘으로 다른 세계를 바라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공감의 운동이 생각하는 조직화였고,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제도가 구획한 취약한 집단을 넘기 위해서는 정체성만으로 동료들 찾는 것(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동료’의 개념을 계속 재구성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불구의 존재를 찾아내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공감은 제도화 투쟁과 동시에 제도와 맞닿는 체계인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IL(Independent Living)센터, 장애인활동지원중개기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한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 행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지도점검과 모니터링, 평가체계란 이름으로 세금도둑이 아님을 늘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그럼에도 장애여성을 만나기 위한 현장으로서 제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제도를 넘어선 다른 사회를 고민하고 싶기에, 제도 안팎을 넘나드는 실천을 고민한다.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에 포섭되지 않고, 사회에서 유예된 존재들과 연대를 모색한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제도가 만들어 낸 장소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터전을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다. 불구의 존재들은 사회적으로 경험과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전받지만, 결국 체제를 흔드는 일탈적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도의 진입이 아닌, 제도를 밟고 더 일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다. 성적으로 일탈되었다는 낙인, 미성숙함과 의존적 존재라는 규정,

---

<sup>2</sup>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中, 2018년 2월 2일, 장애여성공감

사회복지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모욕 등이 섞인 질문엔 언제나 불구의 존재들의 얼굴과 이름이 있다. 사회가 규정한 정체성을 호명하는 대신 서로의 억압을 부를 수 있는 질문과 이름은 무엇일까?

## 2. 바지선 위에 선 것 같은 울렁거림, 장애여성의 취약성이 아닌 차별의 맥락을 말하기

“‘취약성’으로 나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곳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공감의 운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모든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만으로 장애를 설명하려는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약한 정체성의 강요’가 오히려 취약해지는 순간의 나를 드러내고 지원을 요청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공감의 일상에서도 장애여성운동의 동료가 된다는 것이 곧 취약성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돌봄을 받는 몸의 차이, 상호적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관계와 토론을 설명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며, 동료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한다. 장애여성활동가는 취약함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규정한 장애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긴장이 존재하지만 또 한편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장애여성의 모습으로 나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도 불편하다. 내가 맺고 싶은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것인가?”<sup>3</sup>

공감의 장애여성들이 모든 장애여성을 대표할 수 없지만, 이들과의 대화에서 장애여성의 경험이 ‘취약성’으로만 설명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긴장을 느낀다. 장애극복의 서사에 갇히고 싶은 것은 아니다. 매순간 공기와 같은 몸의 한계, 정상성의 압박과 부단히 싸우기 때문이다. 공감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일상의 투쟁을 장애여성 활동가의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장애여성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로서 ‘멋지고 당당한 주체적인 활동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한 장애여성’, 이 두 가지의 이미지만으로 장애여성이 수많은 활동의 고비와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목소리를 내는 멋진 모습과 지하철에서 취약한 몸에 대한 걱정과 동정어린 응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장애여성이 대비되는 모습을 맥락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이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매순간 싸우는 장애여성 활동가도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동료와 활동지원사와 그리고 낯선 이들의 내재화 된 차별에 놓인다. 이 관계는 실패하는 날이 더 많기도 하다. 그래서 찰나의 이동하는 권력, 끝없는 협상과 실패 속에서 부단히 정치를 하는 자신의 고민이 더 드러나길 원한다고

---

<sup>3</sup>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활동가들과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말한다. 취약성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가 ‘정치’에 더 기울기를 바라는 것은 20주년 선언문처럼 정체성이 어떤 지형과 맥락, 동료와의 관계 위에서 변화하는지 중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운동하고 싶은 위치가 장애여성이란 정체성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쉬운 설명을 거절하고 싶기 때문이다.

제도가 경험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비판은 동료인 나에게도 성찰을 던진다. 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여성과 몸으로 관계 맺는 복잡한 과정을 흑 너무 단순화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위와 같이 취약성을 정치화 하는 의미에 동의하면서도 우려를 던져준 장애여성 활동가는 차별 구조와 상황들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현장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 소통되고 토론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장애여성으로서 있는 위치를 물 위에 떠있는 바지선 같다고 했다. 실은 계속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림이 일상이라서 느끼지 못하는, 보호주의와 같이 단단한 통제와 그물들이 마치 내가 물위에 떠있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을때야 비로소 파도가 밀려들며, 내가 흔들리는 바지선 위에 떠 있었던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차별의 일상성, 역사성, 소수자들의 고립된 자원과 위치는 자신의 상황을 상대화해서 보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계 흔들려서 고꾸라져야만 위태로웠던 바지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그 고꾸라지는 경험을 장애인 IL운동에선 ‘위험의 존엄성’이란 개념으로 지지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반복될 선택과 결정을 위한 자기 경험과 자원으로 긍정한다.

또 장애여성들은 취약성을 가진 몸으로만 보이지 않기 위해 장애가 아닌 다른 걸 보여주려고 기를 쓰기도 한다. 그것이 강요된 정상성일 수도 있지만, 나로 살아가기 위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그 선들을 지키기 위한 분투는 늘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경험을 단순하게 피해나 당당하고 온전한 자기 결정의 실현으로만 보려 한다면 맥락에 대한 해석, 구조에 대한 이해, 즉 개인적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힘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 3.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내는 길, 보호주의/전문가주의와 맞서는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

발달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폭력의 ‘연장’이며 ‘일상’이다.<sup>4</sup>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서 폭력과 피해라는 프레임은 ‘장애’를 취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

<sup>4</sup> 여림, ‘발달장애여성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지지하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힘을 키워가는 자기옹호활동’, 2022 하반기 여성포럼, 2022.10, 42쪽.

강화시킨다. 기존의 가부장적, 비장애중심적 사법적 판단을 재생산하게 되며 장애여성을 일방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sup>5</sup> 따라서 사건을 장애정도 및 피해의 강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 활동가가 지적한대로 장애여성의 삶의 맥락을 읽어내려는 관점이 중요하다.

사법절차 안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만이 아닌 어떻게 변화를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sup>6</sup>,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젠더화된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몸에 대한 다양한 위계들은 어떻게 교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장애여성의 차별 경험을 토대로 폭력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한 공감의 오랜 고민이다. 이런 질문을 찾아가기 위해선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 경험이 어떤 지배질서를 공유하며 발생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강요하는 ‘피해자’되기를 거부하며, 피해경험이 흩어지지 않고 사회적 차별을 변화시킬 근거로 축적될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차별받는 이들과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폭력피해 장애여성 지원에만 쏠려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져야함에도 폭력에 대한 피해만 지원한다면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과 성적권리를 실현하는 몸에 대한 협상력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한 지원은 동료를 만나기 위한 삶을 도전하고 일구기 보다, 취약한 장애여성에게 머물기를 강요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p>5</sup> 나무, ‘피해자는 동료시민이 될 수 있는가’, 2021년 IL과 젠더포럼, 2021.11, 54쪽.

<sup>6</sup> 나무, ‘피해자는 동료시민이 될 수 있는가’, 2021년 IL과 젠더포럼, 2021.11, 54쪽.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 장애정도가 저항이 현저히 불가능한 항거불능인 상태일 것 2) 가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한 상태일 것의 2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현행 특례법 ④항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근거로 유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심리평가 결과, 장애등급, 의사소견을 토대로 장애 상태가 심각하여 항거불능인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도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⑤항의 경우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문제를 사회적 위치와 구조의 문제로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장애로’ 인한 무능과 무력을 증명해야 하는 한계가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지원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피해지원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줄타기를 위태롭게 지탱해가면서, 상담이 운동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긴장과 고민의 갱신이 필요하다.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할 때 ‘장애’는 취약성으로 다시 소환된다. 법원에서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는 합리성은 최협의실, 항거불능 상태로 구성된다. 성과 관련된 관계맺음, 성적의사소통을 얘기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한다. 성폭력의 개념 자체를 법, 제도의 문장으로만 해석하거나 단죄하려고 할 뿐 자신의 일상의 문제, 관계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권력구조의 근간에 국가와 지배권력의 통치행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단지 악마화된 가해자를 징벌함으로써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해온 전략’<sup>7</sup>과도 연결된다. 국가의 책임이 성적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sup>8</sup> 이 영향으로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은 폭력과 차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방향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규범화시키는 것으로 강화되어 오기도 했다.

### 3. 잠자는 꿈을 깨우지 마라?

“잠자는 꿈을 깨우지 마라”는 스웨덴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성교육 진행시 ‘자위나 피임 등 성적 자극을 주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다녀온 장애여성공감 해외연수에서 만난 덴마크의 성 상담가 킴은 실제

<sup>7</sup> 나영, 나영정,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섹슈얼리티-인권-운동’, 인권운동 3호, 2021.4.

<sup>8</sup> 나영정, ‘Enjoy Sex(인조이 섹스), 성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 비마이너, 2020.8.2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5>

‘장애인의 자위 경험이 성폭력 발생시 폭력임을 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덴마크에서 89년 마련된 「장애에 구애되지 않는 섹슈얼리티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한 개인의 욕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보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섹슈얼리티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식할 것”이란 내용이 눈에 띈다. 성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단지 특정 성적 행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동료시민의 관계에서 의사와 욕구를 소통하는 관계와 성찰을 연습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때 동의의 과정이 촘촘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 자위도구의 사용여부, 범위, 시선과 몸의 거리, 상대방의 역할, 개입의 수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 등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자의 관점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동의의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자발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인 동의, 무엇에 대한 동의이며,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담은 강요되어선 안되는 자발성, 구체성을 포함해야 한다. 어쩌면 사회가 깨우기 싫은 잠자는 꿈은 장애차별과 이성애 중심주의, 자본주의적 성장체제, 인종주의 등 차별과 불평등 구조와 규범일 것이다.

위험하니 욕망을 자극하지 않게 성적 즐거움을 차단해야 안전은 보장되는 것인가?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아동의 안전을 위해 자기결정권의 제한/통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허락과 통제의 시간은 장애여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로 인식되며,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가지고 보호하는 자에게 위임된다. 돌봄 관계에 있어 그가 의지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강압이나 통제를 행사하기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아동들이 낯선 관계에서 손쉽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맺기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삶의 맥락이 있지만 일관되게 당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야기된다. 장애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가 아닌, 왜 당사자에게만 위험하다고 하는지 사회에 질문하는 동료/가족이 아닐까?<sup>9</sup>

관계의 변화는 권력의 변화없이 어렵다. 권리는 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 이것을 가로막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운다는 원칙이 성적 권리 앞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sup>10</sup> 낙태죄 폐지 이후 국가의 역할 속에서 장애여성은 성과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 권리가 확보될 수 있으려면 장애여성의 삶의 맥락 안에서 동료로서 어떻게

---

<sup>9</sup> 유진아, ‘다른 삶의 전략말하기’,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2019.10, 17쪽.

<sup>10</sup> 나영정, ‘Enjoy Sex(인조이 섹스), 성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 비마이너, 2020.8.2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5>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 조건만이 아닌 관계가 비어있지 않은 권리를 이야기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sup>11</sup>

취약성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장애인이 가진 힘을 빼앗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sup>12</sup> 폭력이란 이름으로 지워진 장애여성의 삶의 서사, 욕망과 성적 즐거움을 시도한 실패의 서사, 몸에 남아있는 즐거운 기억들, 때론 위협에 처하게 된 서사들이 함께 사회에 등장해야 한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삶’<sup>13</sup>의 이야기들이 더 알려져야 한다.

#### 4. 돌봄현장에서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성장은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존엄하게 인정하기보다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도록 부추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와 만난 성장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에 기반해 돌봄의 윤리와 정의를 다시 쓰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상품화되고 젠더화된 돌봄노동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연결 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방식대로 역사를 일구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재의 모습은 왜 성장과 생산으로 인식되지 않는가? 돌봄 현장에서 성적 권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돌봄 관계에서 성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 만약 돌봄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과 토론, 시도들이 가능하려면, 돌봄이 정의롭게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돌봄이 정의로워지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돌봄/재생산 노동은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하위의 노동으로 취급 받았다.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강요하지만,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의 영역이 아닌 재생산으로 규정했다. 돌봄 노동은 시장화되었지만 적당한 평가나 댓가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동시에 돌봄받는 사람을 일방적 수혜자로 위치시키며,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시민 간의 돌봄, 인간과 비인간 간의 돌봄을 비가시화시켰다. 이는 돌봄받는 몸 자체에 대한 통제와 낙인과 동시에 돌봄을

---

<sup>11</sup> 진은선, ‘휠체어와 욕조 사이에서 균형 잡기’, 불꽃페미액션, 2021.2.24,

[http://ffaction.or.kr/bbs/board.php?bo\\_table=m24&wr\\_id=3](http://ffaction.or.kr/bbs/board.php?bo_table=m24&wr_id=3)

<sup>12</sup>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264쪽.

<sup>13</sup> 유진아, ‘운동으로서의 ‘인권상담’을 고민하다 인터뷰 중 일부 “(반려견)기쁨이랑 사는 거 좋아요. 반찬 어떻게 할까 돈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아, 다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혼자 할 수 있어요.” <내담자 A>\*\*, 장애여성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2018.11, 14쪽



수행하는 몸에 대한 비존중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과 분투, 제도의 공백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성적권리는 너무나 사적인 혹은 권리로서 용인조차 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고 만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을 여성의 일, 가정에 국한된 일이라는 전제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국가가 가부장적 보호주의로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선을 긋고 사람들이 돌보는 역량과 자원이 흐르도록 고민하는 것이다. 돌봄을 사회적 과제와 가치로 삼기 위해선 “금전적 가치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체계 그리고 보상과 인정이라는 것은 능력주의, 즉 시장논리와 돌봄은 양립할 수 없다”<sup>14</sup> <돌봄선언>은 “신자유주의는 가장 가까운 친족만을 돌보도록 강조하는 ‘자기 것 돌보기’에 치중하게 하게하고, 극우 포퓰리즘의 우세와 팬데믹 이후의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은 한없이 축소되어 오로지 ‘우리과 같은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sup>15</sup>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나와 ‘같은’ ‘사람’의 범주를 의심하고, 인간 간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와 범주를 다시 설정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돌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자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를 활동지원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나 같이 손 사용이 어려운 장애여성은 자위기구를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보조 없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나의 성적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데 이미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한다. 장애여성인 내가 나의 성적 권리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sup>16</sup>*

자기 몸에 대한 경험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욕망을 들여다보고, 성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에게는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사회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몸, 비정상적인 몸이라는 인식의 내재화로 인해 몸으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내 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덴마크에서 섹슈얼리티를 사적이라 말한다는 것은 섹슈얼리티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벽지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대로, 특정한 형태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존중의 공간을 형성한다는

---

<sup>14</sup> 더 케어 콜렉티브, 《돌봄선언》,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147쪽.

<sup>15</sup> 더 케어 콜렉티브, 《돌봄선언》,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39쪽.

<sup>16</sup> 진성선, ‘몸서 사적이지 않은, 장애여성의 활동보조 이야기’, 비마이너, 2020.9.2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5>

것이다.<sup>17</sup>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문제들을 문제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존중의 공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 5. 탈시설 운동과 지원주택, 성적 권리를 실현하는 현장이 되기 위해

시설화는 ‘지배권력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의 분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무능화/무력화’ 된 존재이게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sup>18</sup> 이다. 따라서 탈시설을 하여도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라는 또 다른 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탈시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탈(脫)’ 할 것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sup>19</sup>

탈시설한 장애인이 머무는 지원주택은 장애인이 안정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주거유지 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포괄한다. 입주자의 모든 지원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주거 공간을 관리하는 지원주택 운영주체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주택 내 사회복지사와 주거코치가 상주하며 입주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의 상황이 변화하여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원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 의뢰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퇴거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주거와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탈시설 이후에도 고립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원주택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기능적인 분리를 분명하게 하여 서비스 이용조건이 주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sup>17</sup> Fritsch Kelly, 「Loneliness and Its Opposite(외로움 그 반대편)」,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5

<sup>18</sup> 조미경, “탈시설 운동의 확장을 위한 진지로서의 IL센터”, 《2018년 IL과 젠더 포럼》 자료집(2018년 10월 23일), 장애여성공감, 44쪽

<sup>19</sup> 앞의 책

또한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주체에게 지원주택 운영권한과 책임을 모두 전가하여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서비스와 그 체계는 관계에 기반한다. 현재 지원주택은 규모가 큰 사회복지 재단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법인이 운영권을 갖는 것에 대한 제재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가 다시 그 시설의 법인이 운영하는 지원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보호, 통제적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독립생활 지원과 조력이 지원주택에만 집중되어 있도록 한 것은 시설에서의 권력 구조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장애인이 시설화되지 않는 관계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탈시설 과정에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사회 서비스와 관계가 성적 권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문제행동, 금지해야 하는 위험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성적 권리를 확보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성적권리 실현을 위해 돌봄의 윤리와 정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서 누가 말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돌봄의 약속을 만들어 갈 것인가?

덴마크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한 『섹슈얼리티를 의제로: 장애 성인 지원 업무 가이드북』<sup>20</sup>은 섹슈얼리티를 지원할 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원자의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섹슈얼리티는 삶에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덴마크 사회서비스법 내 ‘개별적 욕구의 맞는 통합적인 지원 등’의 목적 조항에서 많은 경우 섹슈얼리티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1부에서는 지원자가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지원자는 돌봄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하지만 지원자와 당사자 간,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윤리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지원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나와 있다. 또한 동의와 허용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천 방법과 도구가 소개되어 있다. 2부에서는 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조력과 지원을 하는 경우 전반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피임, 임신과 양육, 보조기구, 의약품 등 실제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의의 내용은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의 경계, 고지의무 등 법률과의 관계와 연결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sup>20</sup> Seksualitet på dagsordenen: En håndbog om professionel støtte til voksne med funktionsnedsættelse; Sexuality on the Agenda: A Handbook on Professional Support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덴마크 국가사회복지위원회, 2012.

‘자기결정권’의 반대말이 시설화/시설화된 상태, 즉 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라고 정의한다면, 장애인이 어떠한 피드백이나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는 몸이 시설화되는 과정이며, “자기결정권”이라는 언어를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몸으로 체화하고 본인 스스로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sup>21</sup> 지원주택은 이러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탈시설 운동의 현장이며, 다양한 몸들이 존중받고, 성적권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성적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그래야 섹슈얼리티를 시설화하는 권력이 시설밖에서도 유지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지원과 조력을 고민할 수 있다.

## 6. 관계가 채워진 권리와 운동을 상상하며<sup>23</sup>

공감은 2018, 9년 기획상담으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지원했었다. 162건의 상담지원 내용중 71건은 일상지원이다. 병원동행, 장보기, 식사준비, 은행 함께가기, 가계부 적기, 통장정리, 쇼핑하기, 옷 고르기, 세제 고르고 세탁하기 등 일상을 유지하는 소소한 것들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담활동가와 피해를 경험한 장애여성은 일상의 시간과 관계를 쌓는다. 이 시간을 거치며 내담자와 활동가는 서로를 신뢰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간다.<sup>24</sup> 상담이 활동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지원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일정정도의 조력이 이루어지지만) 동료시민이 되는 연습을 하는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보장되어 있어도 당사자의 삶을 듣고 존중하는 시간을 쌓지 않으면 그저 친절하고 호의적인 형식적인 존중과 평등만 채워지게 된다. 동료와 역동을 겪어가는 것, 이 역동은 자신과 타인을 조직하며 연루된 관계를 만든다.

한 장애여성 활동가는 피해로 인식되는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거리감을 두고 볼 수 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당시엔 차별인 것을 인식하거나 피해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경험이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 해줄 동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너를 존중해, 우리는 평등해’와 같은 말이 형식적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방향과 시선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함께

---

<sup>21</sup> 진은선, ‘동료’가 되기 위한 자격은 과연 평등한가?, 2019년 II과 젠더포럼, 2019.11, 55쪽.

<sup>22</sup> 한예선, ‘탈시설 운동과 성적권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2021년 II과 젠더포럼, 2021.11, 33쪽.

<sup>23</sup> 진은선, ‘휠체어와 욕조 사이에서 균형 잡기’, 불꽃페미액션, 2021.2.24,

<sup>24</sup> 유진아, 운동으로서의 ‘인권상담’을 고민하다, 장애여성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2018.11, 13쪽.

살펴보고 좀 더 깊게 고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많아지는 게 필요하다. 취약한 몸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 공간/관계에서 내 몸을 드러내도 안전할 것이라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래야 관계안에서 지속성, 일상성, 친밀성의 역동을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장애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망한 섹스를 말하며<sup>25</sup> 장애여성은 자기 몸을 온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까? 장애여성의 몸이 무성적이거나, 취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똑바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즐거운 감각을 찾게 될 때 걱정하거나 죄책감 갖지 않고 정말 즐겨 볼 수 있을까? 장애여성은 어떻게 그 감각/욕구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떤 돌봄관계와 소통 등이 필요할까? 장애여성 활동가 진은선은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관계는 불가능하다’ 고 말한다.

*“깔끔하고 매끈한 욕망이 과연 존재하는가. 욕망과 사회적 억압과 뒤엉켜 있는 공간으로서의 몸,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사생활, 내 공간, 내 몸을 끝없이 노출시키고 있지만, 아무런 갈등도 없는 매끈한 욕망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대한 주도권과 욕망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타인의 조력, 지원이 필요한 몸, 성적인 실천에 지원이 필요한 몸이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긍정하며 욕망을 실현할 것인가. 이때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정의나 약속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내 존엄을 지키면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장애여성들이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쌓고 있는 관계들, 실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욕망에 대해 말할 때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실천들이 가능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실천을 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와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몸에 익숙해지고, 뒤섞이고, 오염되기도 하면서, 스며드는 관계에서 가능한 실천들 말이다.”<sup>26</sup>*

<돌봄선언>에선 사회 전체가 돌봄의 보람과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며, 인간, 비인간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난잡한promiscuous 돌봄”을 제안한다. 난잡한 혹은 문란한 돌봄은 1980~90년대 에이즈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 기준에서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돌봄을 의미한다. 친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이윤과 성장에 국한하여 관계를 한정하지 않는, 정상적 규범에 갇히지 않는, 나와 타자를 돌보는 방법들을 더 찾아 나서야 한다. 김순남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요인들로 연결된 친족망

---

<sup>25</sup> 진은선, 아무도 묻지 않는 ‘장애여성의 섹스’를 말하다, 비마이너, 2020. 08. 24

<sup>26</sup> 진은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깔끔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W/OF, 2022.11.9, <https://wof-nextjs.vercel.app/?artist=12>

안에서 살고 있고, 삶은 곧 난잡한 친밀성의 현장 그 자체”<sup>27</sup>라고 말한다. 이때 ‘난잡한 친밀성의 정치’로 “폐쇄적 가족주의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를 질문하며 동시에 여러 갈래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실천을 동반한다”<sup>28</sup>는 것이다.

돌봄이 친밀하고, 법적인 가족이나 보호자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도 열려 있을 가능성을 상상해야 한다. 이미 장애인, 성소수자 운동 등에서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 결합의 형태,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의 삶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원이 없는 서로의 삶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서로 돌봄은 돌보는 사회에 대한 영감과 돌보는 정치로 조직화하는 투쟁에 가능성을 열어준다. 매끄러운 욕망과 제도가 아닌 오염과 뒤섞이는 감각으로 관계가 채어진 권리와 운동을 상상한다.

### 7. 제도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위험한 몸들로 계속 존재하며 일탈하기

2022년 9월 5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 3차 병합심사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주요하게 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개편되는 점에 대한 우려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탈시설이행 강화를 언급하였다. 특히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에서 ‘지속적인 시설화’와 ‘탈시설 전략에 대한 미약한 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우려는 9년전 대한민국 1차 심사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이다. 왜 우리사회는 10년전과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을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비스대상의 확대 등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시설화’라는 개념이다. 공감의 지속적으 말해왔던 ‘시설사회’는 감금당하는 몸들의 집합체인 ‘거주시설’에서의 이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조차 실현되지 않을때, 그 이전 사회와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몸으로 장애여성이 정체화 될 때 공간이 거주시설인가 지역사회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권리가 박탈되는지, 왜 이 권리의 박탈이 정당화 되는지를 헤집어내어야 한다.

나의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누가 통제하려고 하는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돌봄을 보호의 권력으로 작동시키려는 순간은 언제인가? 기저귀를 찰 것인지 화장실을 갈 것인지를 결정은 왜 돌봄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술한 물음은 모두에게 삭제되어 있다. 사소해보이는 결정을 선택할 수 없는 일상에서 성적권리의 실현은 어떻게 이야기 될 수 있을까?

---

<sup>27</sup>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128쪽

<sup>28</sup>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128쪽

페미니즘 운동이 국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보호주의는 아닐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와 권리가 시설화된 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권을 재구성하거나 누락된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어렵게 만든다. 안전하기 위해 언제나 안전한 길만 가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향한 ‘보호주의’이다. 자기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모색하기 위해서 II운동의 중요한 가치인 위험의 존엄성과 실패할 권리를 향한 도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별첨] 덴마크 국가사회복지위원회(2012)의 『섹슈얼리티를 의제로: 장애 성인 지원 업무 가이드북』을 토대로 작성된 성 정책(Sexual Policies), 현장의 성 정책이 다를 수 있는 주제들, 자위를 위한 행동 지침, 섹슈얼리티를 위한 활동지원 사례

“섹슈얼리티는 모든 사람의 인격에 불가결한 부분이다. 섹슈얼리티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한 측면이며 이는 삶의 다른 여러 면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섹슈얼리티는 성행위의 동의어가 아니다. 오르가즘에 이르는 문제 역시 아니며, 성애적 삶의 총체 *the sum of an erotic life* 역시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섹슈얼리티에 속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섹슈얼리티는 훨씬 폭넓은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온기, 친밀감 *intimacy*을 추구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움직이고 만지고 만져지는가 하는 데에서 섹슈얼리티가 드러난다. 성적인 만큼이나 감각적인 영역이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 교제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이란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성적 건강 또한 기본적 인권이다.”<sup>29</sup>

이 가이드북의 목적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법의 틀 내에서 당사자의 완전성 *integrity*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북은 전문성을 갖추고 타인의 섹슈얼리티를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전문적 업무를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담과 지원을 설명한다

<sup>29</sup> Oversat til dansk fra *Sexuality and family planning, Report of a consultation and research findings*, Langfeldt, 1986.

- 도움을 주고받는 전문가와 장애인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설명한다
- 전문가가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안내, 지원, 교육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관한 교육학적 지침을 제시한다
- 일상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를 소개한다

이 가이드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 발달 지연, 자폐, 뇌성 마비 등 선천적인 것일 수도, 뇌손상, 정신질환, 치매 등 후천적인 살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일에 있어 중요한 가치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른 누구나와 똑같은 기본권을 갖는다. 이 전제는 덴마크 법률과 국제 협약 모두의 가치 기반을 이루는 핵심이다.

사회서비스법은 섹슈얼리티 지원을 특정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섹슈얼리티 관련 상담이나 지원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역시 특정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법의 1장 1절의 목적 조항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법에 따른 조력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나 특수한 사회적 문제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81장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특수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성인에게는 특수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조치의 목적으로 아래를 제시한다.

- 악화 예방
- 계발 기회 및 사회적, 개인적 기능의 개선
- 만남, 교제, 활동, 치료, 돌봄, 간병의 제공을 통한 생애 발달 기회 개선
- 공공주거법 등에 따라 혹은 이 법에 따라 주어지는 공간을 포함해, 각자의 집에서의 특수한 욕구에 맞추어 주어지는 통합적인<sup>holistic</sup> 조치의 제공

섹슈얼리티는 삶에 본질적인 것이기에, 사회서비스법의 목적 조항은 많은 경우 섹슈얼리티 관련 안내와 지원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법은 또한 모든 성인은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을 형태를 막론하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종사자는 협의에 따라서만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반드시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sup>30</sup>

<sup>30</sup> 덴마크 사회복지위원회. 앞의 글, 3쪽.



### 성정치학(sexual politics)의 예시<sup>31</sup>

- 모든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적인 삶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개인의 경계와 자유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스태프와 거주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중요한 선이 있다.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 둘 다 [성관계에-오픈이] 동의해야 consent 하며, 둘은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커플 중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혹은 누군가가 자신이 학대받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 우리는 그저 개입할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를 갖는다.
- 자신의 성적인 필요 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주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를 행할 권리가 있다.
- 거주인이 요청하면 스태프는 상담이나 자위 기구 조달을 돕는다. 혹은 성 전문가와 연계해 준다. 보조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거주인은 자위 기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섹슈얼리티는 사적인 영역으로, 스태프는 이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거주인 각각의 섹슈얼리티는, 거주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스태프 회의 등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 스태프는 거주인이 사용한 자위 기구를 씻고 정리할 의무가 있다.
- 스태프는 성적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주인은 선을 넘었음을 고지받을 것이다. 성적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성 전문가에게 스태프와 해당 거주인을 만나 방안을 찾도록 요청할 것이다.

### 현장의 성 정책이 다룰 수 있는 주제들

- 어떤 것들을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우리 공통의 태도, 가치, 선으로 삼을 것인가?
-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어떻게 열려 있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개개인의 완전성과 선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사회적 양식이나 공사의 구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어떻게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를 반드시 충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조언과 지원에 있어 모든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것,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어려운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디서/누구에게서 지식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 전문가로서 어떻게 서로와 논쟁할 것인가?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속고가 지속되게 할 것인가?

<sup>31</sup> Don Kulick and Hens Rydstöm. 앞의 글, 109쪽.

- 우리는 실습형성교육에<sup>32</sup> 어떤 틀과 절차를 두고 있는가? (예: 기관장의 참여, 서면 동의, 외부 성 자문가 초빙 등.)
- 모든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이 영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라스와 자위 기구[SEKSUELHJÆLPEMIDDEL]를 위한 행동 지침 예시<sup>33</sup>**

- 라스를 머리가 살짝 들리도록 침대에 눕힌다.
- 라스는 기저귀를 벗고 상체는 내의만 입고 하체는 나체로 눕는다. 호출 버저 손잡이를 손에 쥘다.
- 라스의 페니스에 윤활제나 여타 크림을 바르고 바이브레이터를 다리 사이에 놓은 후 페니스를 넣는다. 바이브레이터를 켜고 원하는 속도를 묻는다. 그가 버저를 누르지 않을 경우 언제쯤 방에 돌아올지를 협의한다.
- 라스가 다 마치면 바이브레이터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 바이브레이터를 라스에 책상 위에 두고 충전시킨다. 다음 근무 시 바이브레이터가 책상 위에 있으면 침실의 큰 바구니 속에 있는 상자에 넣어 둔다.

<sup>32</sup> [역주] 이 소책자에서는 성교육(sex education)을 뜻하는 말로 seksualopläring과 seksualundervisning, 두 가지가 사용된다. 후자는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성교육, 전자는 자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시연이나 실습을 포함하는 형태의 성교육인 듯하다. 후자는 성교육, 전자는 실습형성교육으로 번역했다. 실습형성교육으로 옮긴 seksualopläring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5장의 해당 절을 참고하라.

<sup>33</sup> 앞의 글, 106쪽.

### 섹슈얼리티<sup>34</sup>

섹슈얼리티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한계선과 규범에 관해서 그럴 수 있죠.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최대한 분명히 해두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게는, 당신이 다른 일에서 늘 하는 수준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따금 DVD를 빌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DVD가 이따금 포르노 영화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유리돔<sup>uridome</sup>을 사용하며, 당신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유리돔을 끼우고 빼게 될 것입니다 [유리돔은 안에 접착체가 발라져 있는 콘돔같이 생긴 기구로, 끝에는 플라스틱 튜브가 연결돼 있다. 콘돔을 페니스에 씌우고 튜브는 종아리에 매는 플라스틱 주머니에 연결한다. 이 주머니에 소변을 받는다]. 섹스에 있어서라면 콘돔을 끼워 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것입니다. 파트너[kæreste]가 오는 날이면 평소처럼 저를 침대에 눕히고 유리돔 대신 콘돔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세를 맞춰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 파트너는 대개 그/녀 스스로[klare sig selv] 할 수 있거나 조력자와 함께 옵니다. 성행위 자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당신은 저를 업소까지 태워다 주고 침대에 눕혀 주며, 때에 따라 바지를 벗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긴 산책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 흔히 하시는 것 이상의 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음부를 씻겨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겠지만, 이는 평소에도 하실 일입니다.

당신을 채용하게 된다면 여기 언급할 일들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며,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는 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을 침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내밀한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겠습니다.

섹슈얼리티가 제게 필요한 것<sup>a need</sup>[et behov]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

<sup>34</sup> 앞의 글, 118쪽.